

## 재해대책 명령서

(토지·가옥·시설·물자)

성 명 :

생 년 월 일 :

주 소 :

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라  
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토지·가옥·시설 또는  
물자를 사용(수용·제거)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

직인